요양보호사 양성과정

- 국가자격증 취득 -

요양보호사 양성 기본개요

2021. 3.

사단법인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
(부설) 至誠요양보호사교육원

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
- 기본개요 및 교육안내 -

1. 요양보호사 자격개요

○ 개념 및 법적근거

- 요양보호사란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.

-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2008.7월)에 대비하여,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지식·기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·도지사 발급)를 신설함.

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.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

○ 자격취득절차 :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
<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>

교육신청

○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 : 제한 없음
※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) 후 등록
※ 교육비납부

⇩

교육이수

○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・실습기관 → 교육생)
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

⇩

자격시험응시

⇩ (합격 후)

자격증 교부신청

○ 합격자 → 광역시·도
※ 구비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, 건강진단서, 사진, (이하 해당자) 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

⇩

자격증 검정

○ 광역시·도지사의 서류검정
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

⇩

자격증 교부

※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되므로, 해당 교육기관은 사전에 교육생 모집 시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참조(“별첨 2” 수강등록안내서 숙지).

<※ 요양보호사 결격사유>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요양보호사의 업무

○ 업무내용

-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
(참고)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

- **(요양보호사 1급)**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  ※ 시설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제공
- **(요양보호사 2급)**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  ※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)

○ 배치시설

-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, 재가 노인복지시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(요양/재가),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 제외)
  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.
  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.

4. 교육가능대상

○ 교육가능 대상 : 학력·경력, 남녀노소 등 제한 없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.

○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.
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
- 27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(출입국관리법」시행령 제23조 제2항 1, 2호에 한함)
- 28의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- 28의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- 28의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- 31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
5. 교육시간

○ 요양보호사

구 분		총시간	이론	실기	실습
신규자		240	80	80	80
경력자	기타일반	160	80	40	40
	요양/재가	140	80	40	20
	요양+재가	120	80	40	0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	간호사	40	26	6	8
	사회복지사	50	32	10	8
	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	50	31	11	8

※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"별첨 2"(교육시간 감면대상) 참조

○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 (승급)

구 분	총시간	이론	실기	실습
경력자*	60	40	20	-
무경력자	120	40	40	40
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 · 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
노인복지법 부칙

③ 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
<별첨 1>

【수강등록안내서 참조】

< 안내사항 >

1. 요양보호사자격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서 시·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.
2.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규정된 **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**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
  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 3. 피성년후견인
 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   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교육수료 및 시험합격만으로 자격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의 검정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**교육과정 허위 이수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   ※ 교육의 수료 후 **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 원본**을 받아 **본인이 보관**하여 자격증 발급 시 **제출**하여야 합니다. 이를 분실할 경우 자격증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음.

4. 자격자반 또는 경력자반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   ※ **자격자반**의 경우 ① **해당 자격(면허)증 발급일 이후 수강등록이 가능**하며, **경력자반**의 경우 **요양·간병 종사경력이 1년이상(1,200H) 인정되어야 수강가능**
5.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, 취업을 위해서는 시험합격 후 반드시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6.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 및 연령제한이 없지만, 실제 취업 시에는 시설

의 채용요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(학력·연령 제한 등)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**따라서 본인이 실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, 자신의 요건과 채용요건이 맞는지 등 취업시장에 대해 미리 조사한 후 자격취득 여부를 결정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. **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**(방문간호제외)입니다.

※ 병원 간병인, 노인시설종사자 중 간호(조무)사, 물리치료사, 조리원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.

7.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**본인이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**하셔야 합니다.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취업을 알선·보장하지 않습니다. 또한 **요양보호사의 급여 및 근로시간은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.(「근로기준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)**
8.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,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시설이 지급합니다.
9. 현재 복지부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회 가입 권유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,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10. 교육비 환불은 소비자관계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합니다.
11. 기타 요양보호사 교육관련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- '정보'-'사업'에 게시된 "요양보호사 양성지침"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동 교육기관은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**교육생의 신분증,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함을 확인**하였습니다. 만일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**교육생의 불편 등에 대해 성실히 책임질 것을 서약**합니다.

자필로 (서약합니다)를 기재
교육생 수강신청반 : 표준, 경력자, 자격소지자, 승급
증빙서류 종류 :
년 월 일
교육기관명 ○○○ 직위 ○○○ 성명 ○○○ (서명)

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자필로 (확인합니다)를 기재
년 월 일
○○○ 반 교육생 성명 ○○○ (서명)

<별첨 2>

【교육시간 감면대상】

1.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
○ 감면내용 : 노인요양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
2. 경력자 :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*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인정되는 자.
(* 장애인활동보조인)

○ 감면 세부내용

- 일반 :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
-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시설실습 전체면제
-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재가실습 전체면제

→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

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"별첨 3"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근무기간[기간(1년 이상)과 시간(1,200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]이 표시 되어야 함.

[별첨 3]

【경력증명서(예시)】

경 력 증 명 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
사항</td><td rowspan="2">성 명</td><td>한 글</td><td></td><td rowspan="2">주민등록번호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한 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연락처</td><td>집 ( ) - - -
휴대폰 - -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경
력
사
항</td><td colspan="2">전 근무처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근무기간</td><td rowspan="2">직 위</td><td rowspan="2">근무부서</td><td rowspan="2">직무
(구체적인 업무내용)</td></tr>
<tr><td>부터</td><td>까지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근무
년수</td><td colspan="2">년 개월(시간)</td><td>최종 직위
또는 직급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퇴직
사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상
벌
사
항</td><td colspan="3">포 상</td><td colspan="3">징 계</td></tr>
<tr><td>년월일</td><td>종류</td><td>시행청</td><td>년월일</td><td>종류</td><td>시행청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용도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/table>

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.

담당자 확인	

년 월 일

기관장『직인』

※ 경력증명서 양식이 이와 다르더라도 **간병요양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과 기간(시간)**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야 함.